

의안검토보고서

1. 발의 또는 제출자 : 대전광역시교육감
2. 건 명 : 대전광역시학원의설립·운영및과외
교습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
3. 안 건 요 지 : 불 임 참 조
4. 검 토 의 견 : 불 임 참 조

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불임과 같이 보고합니다.

2008년 7월 21일

교육사회위원회
전문위원 안문환

대전광역시학원의설립·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이 조례안은 2008년 6월 23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1. 제안이유

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및 「동법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,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학원설립·운영자 등의 책무규정 신설함(안 제2조).

-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(1인당 의료실비 배상금액 3천만원이상)
- 학원·교습소 수강생들에 대한 체벌금지 등 인권보호 규정 신설

나. 학원시설 일반적인 기준 신설함(안 제3조).

다. 학원의 단위시설 기준 등 신설함(안 제4조).

- 강의실 일시수용인원 상향조정 : 1㎡당 1.2인 → 1㎡당 1인
- 열람실 및 실험·실습실의 단위면적 기준 : 열람실 60㎡이상, 1㎡당 수용인원 0.8인, 조석의 남녀별 구분 배열, 실험·실습실 45㎡이상
- 학원의 환경기준 등 신설 : 인공조명 300룩스 이상 등
-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기준 마련.

라. 학원 교습과정별 시설·설비 기준 신설함(안 제5조).

마.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기준 설정함(안 제6조).

- 강의실 230㎡ 이상, 보건실 33㎡ 이상, 체육시설 100㎡ 이상 등

- 숙박시설의 위치를 강의실이 속해 있는 건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, 생활지도 담당인력 1인 이상 배치.
- 급식시설은 영양사 1인 배치..
- 바.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을 제한함(안 제7조).
 - '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 등록 심의위원회'의 시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고, 세부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함.
- 사. 교습과정별 일시수용능력 인원수 산정을 구체화함(안 제8조).
- 아. 교육장이 수강료 등을 조정할 경우 학원 등으로부터 관계 증빙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(안 제12조).

3. 검토의견

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·보완하려는 사항으로,

주요 내용은

- 안 제2조에 학원설립 운영자 등에게 수강생들의 생명·신체 상의 손해발생에 대비한 배상조치 의무화에 따라 배상금액의 최저한도를 정하고,
- 안 제3조 내지 제4조는 학원의 교육 및 보건위생환경 개선을 위해 일반 및 단위시설 에 대한 기준을 정하였으며,
- 안 제5조에는 학원 교습과정별 시설·설비 기준을 정하고,
- 안 제6조 내지 제7조는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강의실, 보건실, 체육시설, 급식시설 등에 대한 등록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, 교육감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
- 안 제8조는 실험·실습·실기를 요하는 학원 중 강의실과 실습실을 동시에 사용하는 학원의 일시수용능력 인원 산정 방법을 구체화 하였으며,
- 안 제12조는 수강료 등의 금액을 시행일 10일전까지 관할 교육장에게 통보토록 함.

조례안을 검토한 결과

-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 등을 통하여 학원 등의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 하였다고는 보아지나, 교육의 주체인 학생 및 학부모의 이익도 반영해야 할 것으로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일부조항의 경우는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사료됨.
- 첫째, 안 제2조에 학원설립·운영자 등의 책무규정을 신설 하여 학원의 부담을 증가시켰으나, 수강생의 생명·신체상의 손해발생에 대비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볼 때, “1사 고당 배상금액 10억원이상”의 규정의 신설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겠으며,
- 둘째,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“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”을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, 학원수강의 실수요자인 학생 및 학부모, 학원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추진 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아지는 만큼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,
- 셋째, 안 제13조 제3호의 규정은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과 동 규정을 편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감안할 때 좀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음.